



#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

## 1. 보험금 청구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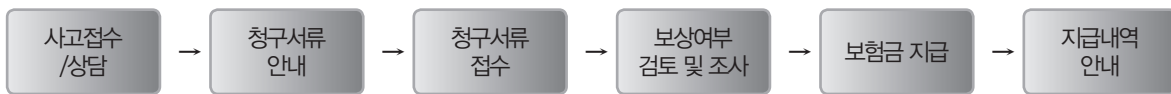
- 보험금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. 단,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(부모)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.(가족관계확인서 제출)
- 안내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,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.

## 2.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

-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.(상법 제662조)  
단,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.

## 3.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

-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접수된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문자를 통해서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.



## 4.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

-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,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\*손해사정법인 :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 받은 업체

- 동부화재가 손해사정법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동부화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## 5.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

-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.

## 6. 의료심사

-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,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동부화재가 부담합니다.

## 7. 보험시간 치료비 분담 지급(비례분담 적용) 등

-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 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.
- 비례보상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.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.

## 8.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

-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접수시 요청하신 핸드폰 연락처로 보험금 지급내역이 발송 됩니다.
- 동부화재 홈페이지([www.idongbu.com](http://www.idongbu.com))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 9. 재심사 청구

- 동부화재의 보험금 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부화재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- 인터넷 접수 : 홈페이지([www.idongbu.com](http://www.idongbu.com) 고객센터)에 접속하여 신청
  - 우편접수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(대치동, 동부금융센터) 11층 소비자보호파트
  - 전화상담 : 1588-0100